第10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2001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面

1. 2001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

의안 번호	774

제출년월일 : 2000. 11.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구청사 제1별관 증축, 창신제3동청사 건물신축 및 토지매입, 청운경로당 매각 등

3. 관리계획(안) : 별첨

4. 관계법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2001년 예산에 편성)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2001년도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419.3	950,000				1	419.3	950,000	
		건물	2	2,142.5	724,000				2	2,142.5	724,000	
		기타										
	1. 매입	토지	1	419.3	950,000				1	419.3	950,000	
		건물										
		기타										
	2. 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2	2,142.5	724,000				2	2,142.5	724,000	
		기타										
처분	계	토지	1	738.9	573,386				1	738.9	573,386	
		건물	1	270.2	37,212				1	270.2	37,212	
		기타										
	4. 매각	토지	1	738.9	573,386				1	738.9	573,386	
		건물	1	270.2	37,212				1	270.2	37,212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사용및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6-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1	건물	수송동146-2	502.5	324,000	2001.상반기	구청사 증축	종로구청	
2	건물	창신동23-837	1,640	400,000	2001.상반기	창신3동청사신축	종로구청	
3	토지	창신동23-837	419.3	950,000	2001.상반기	창신3동청사신축	재정경제부	

2001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6-3)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1	토지	청운동4-20	738.9	573,386	2001.하반기	이용이 편리한 저지대로 이전후 매각	종로구청	
2	건물	청운동4-20	270.2	37,212	2001.하반기	"	종로구청	

2.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782

제출년월일 : 2000. 11.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권고안으로 시달된 규제정비사항인 주차거부금지 조항 및 하역주차구간에 관한 조항의 규제 내용을 완화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우리 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주차거부금지 규정완화(안 제3조제6호 삭제)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규정 개정(안 제8조제5항)

○부설주차장 설치면제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조항 신설(안 제21조의 2)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조항신설(안 제21조의 3)

3. 개정 근거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
(서울특별시 주차01110-1257. 2000.7.3)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 및 국무조정실 권고안
(서울특별시 조직 05090-316. 2000.4.7)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영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1.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거부금지) (생 략)	**제3조(주차거부금지)** (현행과 같음)
1.~5.(생 략)	1.~ 5.(현행과 같음)
6. 1회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	〈삭 제〉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 ④(생략)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 ④(현행과 같음)
⑤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다.	⑤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⑥(생략)	⑥(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영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신설 >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 설〉	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4.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을 감액할 수 있다. 단, 법 제19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2를 감액할 수 있다. 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1.5㎡로 한다.